#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(오세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35

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오세희·한정애·박정현

민병덕 · 김동아 · 복기왕

박 정・김영배・이수진

김 윤・조인철・문금주

임호선 · 김영환 · 강준현

강유정 • 이광희 • 양부남

박희승 • 김성화 • 민홍철

이재강 의원(22인)

### 제안이유

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"코로나19"라 함)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처하여 정부는 정책자금,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였음. 방역조치가 종료되고,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소 상공인은 이자 납부와 대출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.

현행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일부 법률이 정책자금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, 그 내용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에 한정되어 있어금융기관의 채무 조정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

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, 이자 감경 및 보증 지 원, 대출의 감면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적용 대상으로 함(안 제5조).
- 나. 소상공인이 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할 경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상환을 유예하게 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다. 소상공인이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하도록 함(안 제7조).
- 라. 소상공인이 이자감면을 요청할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사에 따라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- 마. 소상공인이 부채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그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 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- 바.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, 상환유예, 장기분할상환, 이자감면,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하도록 함

(안 제10조).

- 사. 상환기간 연장, 상환유예,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 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, 대상자 및 지원규 모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함(안 제11조).
- 아. 정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증제도를 수립·운용하도록 함(안 제12조).
- 자. 부채가 없거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온 소상공인에 대한 향후 정책자금의 우선 지원 및 부채를 조기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 자 환급 등을 규정함(안 제15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해 경영 악화 및 부채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소상공인"이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
- 2. "방역조치"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된 조치(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)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말한다.
- 3. "금융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  - 가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  - 나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 - 다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
- 라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- 마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은행
- 바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협은행
- 사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- 아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
- 자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
- 차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
- 카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
- 타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- 파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
- 하.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
- 4. "정책자금"이란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.
  - 가. 소상공인이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 3항에 따라 대출받은 자금
  - 나.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정부가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자금
-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바

- 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하여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하여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제5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으로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6조(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) ①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구체적인 대상,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장기분할상환) ①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하도록 하여야 한 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분할상환의 구체적인 대상,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이자 감면) ① 정부는 방역조치의 시행기간 중에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이자감면을 요청할 경우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(이하 "소상공인정책심의회"라 한다)의

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,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대출의 감면) ① 정부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 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대출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,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) ① 금융기관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.
  - 1. 상환기간 연장
  - 2. 상환유예
  - 3. 장기분할상환
  - 4. 이자 감면
  - 5. 채무 감면
  -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.
- 제11조(금융지원의 신청 및 절차)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금융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자 및 지원규모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심의하여 정한다.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금융지원의 업무를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2조(보증 지원) ① 정부는 제2조제3호사목부터 하목까지의 금융기 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「신 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,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·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.
  - 1.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것
  - 2.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채상환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
  - 3.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부채의 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일 것
  - ②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의 구체적인 대상,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채무조정 기본원칙) 채무조정은 소상공인의 자산,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- 제14조(정보 제공 요청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9조

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대출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지방자치단체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법인·단체의 장,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1. 소상공인의 대표자의 성명,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) 등 인적사항
- 2. 사업자등록번호, 매출액, 개업일, 폐업일,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 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- 3.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대출 규모를 결정을 위하여 필 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대출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상 공인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금융정보"라 한다)

- 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신용정보"라 한다)
- 3.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보험정보"라 한다)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대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금융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「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이 동

- 의한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2제1항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 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8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·절차·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채무상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) ① 정부는 부채가 없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향후 정 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.
  - ②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채 조기 상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부채를 상환기일 전에 상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환액에 대한 이자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.
- 제16조(재원)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금융지원 및 금융기관의

손실 보전을 위한 자금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